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8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이해식 · 박상혁 · 한민수
양부남 · 차지호 · 서영석
윤건영 · 문진석 · 서영교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감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에 따른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감찰관의 임용 등)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②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찰관의 모집 및 임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사무”를 “사무(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當否)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12조(의결사항)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3조에 따른 선택적 검 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 항</u>
3. ~ 16.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3.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4(감찰관의 임용 등) ①</u> <u>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 속으로 감찰관을 둔다.</u> <u>②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u> <u>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u> <u>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u> <u>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u> <u>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u> <u>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u> <u>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u> <u>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u> <u>계사</u>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 ③
(생략)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찰관의 모집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감찰 사항)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사무(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

3.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 2. (생략) <u><신설></u>	<u>으로 한정한다)</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u> <u>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u> <u>의 당부(當否)</u>
--	---